

의안번호	제2858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11. 14.

#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58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24. 3. 5.)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2)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408호
  - 가) 예고기간: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김 종 완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